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1380
----------	------

2020년 6월 17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3월 25일 김종무 의원 (찬성18명)
2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8일
3. 상정일자 :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6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요지

1. 제안이유

- 거주지의 재개발,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출 후 재전입하는 참전유공자가 다수 있음에도 타 시·도에서 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이라는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
- 따라서, 타 지자체와의 중복 수령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위인 거주 '1개월'로 지원 대상 조건 및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함(안 제3조).
- 타시도 전입자 등은 전입일로부터 1개월경과 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등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
- 다. 기 타: 해당없음

I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동 조례 개정안은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거주기한이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참전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서울시 참전유공자 현황

- 현재 서울시에서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4조 및 『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5조에 근거해 요건을 충족하는 참전유공자(‘20년 1월 기준 33,600명)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음.
 - 현재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대상으로, 월 10만원을 지급함.
- “참전유공자”란 상위법인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,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함.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6·25전쟁”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2.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 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- 제5조(등록 및 결정)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
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
-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,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.

※ 2020년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사업 개요

- **지급대상 : 33,600명**
 - 만 65세 이상의 「참전유공자」로서,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(조례 제3조)
 - 연령기준 : 주민등록상 생년월일('20.1월 현재', '55.1월 이전 출생자)
※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
- **지급금액 : 1인당 월 10만원**
- **예 산 : 40,320,000천원(시비 100%)**
 - 산출근거 : 33,600명 × 100,000원 × 12월 = 40,320백만원

-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절차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대상자의 적격성 확인(보훈청), 거주요건의 확인 후 수당지급의 절차를 통해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.



- 본 조례는 2009년 제정 당시 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이 1년이었으나 2012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축소시킨 바 있는데 서울시는 3개월이라는 최소 절차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훈지청과의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하며, 전출해 온 시·도 중 일부에 참전유공자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음.
- 이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, 중복지급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요건(3개월)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음.

※ 제236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응답
(심사보고서)

- 질의 : 타 시·도에서 이사해 왔을 때, 참전명예수당을 바로 받지 못하고 1년을 기다려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, 본 개정안처럼 6개월까지 기다려야하는 것도 너무 긴 시간임. 이에 대한 답변바람.

- 답변 :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거주기간 요건을 없애는 경우도 있으나, 현재 우리시의 조례상 중복급여는 줄 수 없으므로, 중복급여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 처리 시간이 필요함.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 할지라도 법률에 의해 해당자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3개 보훈지청에 자료를 보내는 등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하며, 전출해 온 시·도 중 일부는 참전유공자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곳도 있고, 시행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을 확인해야 함.
- 질의 : 6개월 계속 거주 기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는지 답변 바람.
- 답변 : 1개월은 너무 촉박함.

- 그러나 2020년 4월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고¹⁾, 일부 지자체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음. 더욱이 본 조례의 대상자는 타 지자체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지적한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1)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「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시행하고 있음.

- 동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그에 응분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하나,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거주기간 3개월 이상인 자로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빨의되었음.
- 집행부에서는 타 시도에서 전입한 신규대상자의 거주요건을 단축시, 2개월 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도래, 차상위 계층 해당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추가 소요예산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-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라는 자격요건에는 중복·누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 행정기간이었으나, 행정의 전산화가 진척되었고, 현재도 명단 관리 및 지급일과 자격조회 양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정을 1개월로 단축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됨.

참 고

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거주지 제한 현황

지자체	근거 조례	거주지 제한	시행일
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	19.3.28.
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, 거주하는 자	19.01.01
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	18.01.01
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,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	19.06.03
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	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거주한 사람	20.04.01
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	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거주하는 사람	19.02.15
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	16.11.03

지자체	근거 조례	거주지 제한	시행일
세종특별시	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	17.11.10
경기도	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	16.12.16
강원도	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	18.11.09
충청북도	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	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	20.01.01
충청남도	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	17.06.30.
전라북도	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-	14.12.12
전라남도	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,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	17.12.28
경상북도	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	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	15.12.31

지자체	근거 조례	거주지 제한	시행일
	조례		
경상남도	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도내에 주소를 두고 법 제5조에 따라 등록 된 참전유공자	17.12.28
제주특별자치도	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	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소를 두고 있는 사람	20.01.01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8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3월 25일
발의자 : 김종무 의원(1명)
찬성자 : 이병도, 김화숙, 김제리, 고병국,
정재웅, 신정호, 이경선, 성흠제,
이영실, 김평남, 박기재, 이호대,
김경우, 임종국, 이태성, 김경영,
김호진, 정진술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거주지의 재개발,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출 후 재전입하는 참전유공자가 다수 있음에도 타 시·도에서 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이라는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
- 따라서, 타 지자체와의 중복 수령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위인 거주 '1개월'로 지원 대상 조건 및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함(안 제3조)
- 타시도 전입자 등은 전입일로부터 1개월경과 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3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 중 “발생일로부터 3개월”을 “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<u>3개월</u>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급한다. 다만, 타 시·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, 신규 등록자는 <u>발생일로부터 3개월</u> 경과 후 지급한다.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 <u>1개월</u> ----- --.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 <u>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</u>----- -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(지원 대상) 및 제5조(참전명예수당)제3항의 서울시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 및 주민등록재등록, 신규등록자의 참전명예수당 2개월 지급분 추가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(제3조제1항제2호)

-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전입자 및 주민등록재등록자, 신규등록자에 대한 별도의 현황이 없어 비용추계 곤란
 - 단,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사유는 전입과 주민등록 재등록·신규등록 뿐 아니라 65세 도래 사유가 있고 전입 등으로 인한 신규지급대상 인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당관	남승우
정책조사팀장	여차민
주무관	채소영
☎ 02-2180-7942	
e-mail : liz1998@seoul.go.kr	